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
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
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시설 유희공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공시설 유희공간 사용료를 결제하는
자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
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12조제3항)
- 나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
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사용료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2조(사용료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세입 감소 : 개방공간의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용료 수입		
	감면액 추계(A-B)	감면이전 징수 추계(A)	감면이후 징수 추계(B)
5% 감면 적용시	1,293	25,856	24,563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 백다영 (02-2133-5816)